

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직무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가. 직업윤리 등 소양교육: 10퍼센트

나.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: 50퍼센트

다. 노무관리·상담기법 등 실무교육: 40퍼센트

2. 실무수습은 다음의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다.

가. 개업노무사의 사무소

나. 합동사무소

다. 노무법인

라. 공인노무사회

마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